

「교하미곡종합처리장무상양도에관한청원」

의 건 서

교하 미곡종합처리장 무상양도에 관한 청원건은 그동안 집행부와 청원인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상세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자체심사 과정에서 청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교하 미곡종합처리장은 1,600여 교하 쌀생산농가들의 기대와 숙원을 반영하여 '94년에 낙후 농촌 특별지원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로써

위탁경영자인 교하농협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들어 정부의 양곡정책 변화에 따라 농협 자체 수매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설용량이 태부족하여 시설확장이 불가피하고

기존 시설들이 상당부분 교체를 해야하는 등 농협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8조에 근거한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코드번호 제 77번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관한 지침 사항을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타 재원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사업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그 예로서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등 7개 부문사업을 명시하여 지적하고 있어

이건 시설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투자가 제외된 시설로서 탄현농협이나 북파주농협의 미곡처리장과 같이 농어촌발전기금 또는 구조개선사업비를 일부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여 농협주체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정주권 개발사업 근본취지를 보더라도 투자된 사업들이 당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도록

당해 지역 농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시설의 소유는 물론 관리·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함에도

직접 수익당사자인 농업인 단체들은 배제하고 시와 교하농협간 쌍방협약에 의해 시의 행정재산화 한뒤 임차료를 부과, 시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온것도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 청원의 핵심사항인 시설물 무상양도 요구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농협에 양도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법 현실상 불가능 것으로 검토되었고,

교하농협이 추가시설을 자체사업비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을 선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

○ 그러나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이건 시설의 공익성과 농업구조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큰점을 생각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개
선 방안을 주문함.

첫째. 낙후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투자
된 특별재원을 행정재산으로 등록하여 시에서 임
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수입
을 정주권 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에 환원시켜 시
설 재투자 또는 당해지역 수익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며

둘째. 당면 현안사항인 시설비 재투자 문제 해결을 위하
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등 타 재원을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존설비 보수나 시설보강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셋째. 또 시설 소유권이 파주시로 존속되는한 향후 시설
유지와 재투자문제 등 계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
는 바 근본적인 소유권 이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앙부처에도 가능성 여부를 질의토록 하는 등 적
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함.